

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공정개선(혁신기반, ESG, 스마트 제조)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의 제품 생산성 향상 및 ESG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소기업 공정개선(혁신기반, ESG, 스마트 제조)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2월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공정개선 지원사업
- 사업목적
 - 제품 생산성 및 품질 향상, 원가절감, 노동환경(조건), 중대재해 예방, 온실가스 저감, 작업환경 안전개선,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공정개선으로 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마련
- 지원내용 :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개선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47개 과제(참여기업) 정도(예산한도 내)
- 공고기간 : 2026. 2. 2.(월) ~ 2. 27.(금)
- 접수기간 : 2026. 2. 2.(월) ~ 2. 27.(금) 16:00 까지(기한엄수)
- 사업기간 : 2026. 2월 ~ 12월
- 수행기간 :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~ 2026. 10. 30.까지 과제수행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¹⁾ 제조기반 소기업²⁾
 - 1) 생산공장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
 - 2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‘별표3’ 업종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
- 지원제외 : 공고 내 지원제외 사항 참고

□ 사업구조 : [Track 1] 기업단독형 / [Track 2] 협업형(산·학·연 등)

| 구 분 | 컨소시엄 구성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[Track 1] 기업단독형 | - 참여기업 주관으로 단독 과제 수행 - 협약 후 진흥원 멘토 POOL 내에서 담임멘토 1:1매칭 필수 |
| [Track 2] 협업형(산·학·연 등) | - 도내 소재 대학 및 산학협력단, 연구기관, 기업 지원단체 (비영리 단체 限) 협업기관과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|

□ 추진체제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[Track 1] 기 업 단독형 | 주관기업 |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사업비의 전체를 부담하고 주관기관의 역할로 과제수행 |
| | 과제멘토 | 전문기관, 교수, 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기업진단을 통한 공정개선 전략, 로드맵 수립, 목표 달성 자문 역할 수행 |
| [Track 2] 협업형 (산·학·연 등) | 협업기관 | 참여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내 소재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지원 단체(비영리 단체 限) |
| | 참여기업 |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여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 |

□ 사업비 구성

○ 지원금액 : 4천만원(총 사업비의 90%이내 지원)

- (도비지원금) 총 사업비의 90% 이내, 4천만원 한도 지원
- (민간부담금) 총 사업비의 현금 10% 이상*, 부가세 기업 별도 부담

[혁신기반 공정개선 사업비 구성 예시]

| 구분 | 총 사업비 (A+B) | 도비 지원금 [Ⓐ] (4천만원 한도) | 민간부담금(현금) [Ⓑ] (도비지원금의 10% 이상)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예시1 | 44,000,000원 | 40,000,000원 | 4,000,000원 |
| 예시2 | 50,000,000원 | 40,000,000원 | 10,000,000원 |
| 예시3 | 40,000,000원 | 36,000,000원 | 4,000,000원 |
| 예시4 | 39,600,000원 | 36,000,000원 | 3,600,000원 |
| 예시5 | 33,000,000원 | 30,000,000원 | 3,000,000원 |

2

지원유형 및 지원내용

◇ 공정개선(혁신기반, ESG, 스마트 제조) 지원

□ 지원개요

○ 총 예산 : 1,880백만원

○ 지원목표 : 47개사 정도(기업당 40백만원, 자부담 10% 별도)

*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과제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□ 지원내용

○ 혁신기반 공정개선

- 생산 제품 신뢰성 확보(성능 및 품질향상, 불량률 관리 등) 또는 효율성 증대(리드타임 단축, 재고비용 절감 등)를 위한 공정개선

[공정자동화]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통해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 도모

[공정효율형] 생산공정의 불필요하거나 반복·중복단계를 축소·병합 또는 일괄공정 등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공정효율 증대

[품질개선형] 공정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품질향상 등 품질관리 구축

○ ESG 공정개선(환경개선, 사회적 책임 강화)

- 친환경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·오염물질 저감, 자원 효율화 환경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, 작업자 안전 설비 공정개선
- 지원분야(예시)

| 지원분야 | 공정개선 분야 | 지원대상 |
|---|------------|--|
| E 환경개선 (온실가스, 대기오염, 저감, 에너지 재활용 등) | 연·원료 전환공정 | ○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 대체 공정 |
| | 신재생에너지 설비 | ○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정 |
| | 에너지 회수·절감 | ○ 미활용 열, 폐열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, 재이용 공정 ○ 고효율 장비, 공정설비 사용 에너지 절감 |
| | 탄소포집·저장·활용 | ○ 탄소 포집공정 설비,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 |
| | 오염방지 | ○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○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(유해물질 포함) 사용 절감 |
| | 유해원료 사용절감 | ○ 유해성 원료, 폐기물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 |

| 지원분야 | 공정개선 분야 | 지원대상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---|---|---|------|------|---|---|
| S 사회적 책임 강화 (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근로자 보호) | 중재 재해 예방 작업 환경 및 유해·위험 요인 공정개선 | ○ 공장 내 작업 환경 및 작업자 안전 개선 - 공정 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완 개선 - 공정 중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개선 - 노후·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등 - 기타 중재 재해 예방 작업 환경을 위한 공정개선 | | | | | | | |
| | ※ 예시) 작업자의 안전사고 재해 예방 공정개선 | | |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선 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선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<p>안전조치 미흡 노후 주조설비로 화재·폭발, 맞음, 끼임 등 재해발생 위험</p> </td> <td>  <p>신규 주조설비 및 산업용 로봇 설치</p> </td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선 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선 후</th> </tr> <tr> <td>  <p>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도금설비로 화재·폭발, 급성중독 등 재해발생 위험</p> </td> <td>  <p>신규 자동화 도금설비 설치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text-align: center;">중소사업장 노후·위험공정 개선사례 / 고용노동부 제공</p> | 개선 전 | 개선 후 |  <p>안전조치 미흡 노후 주조설비로 화재·폭발, 맞음, 끼임 등 재해발생 위험</p> |  <p>신규 주조설비 및 산업용 로봇 설치</p> | 개선 전 | 개선 후 |  <p>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도금설비로 화재·폭발, 급성중독 등 재해발생 위험</p> |  <p>신규 자동화 도금설비 설치</p> |
| 개선 전 | 개선 후 | | | | | | | | |
|  <p>안전조치 미흡 노후 주조설비로 화재·폭발, 맞음, 끼임 등 재해발생 위험</p> |  <p>신규 주조설비 및 산업용 로봇 설치</p> | | | | | | | | |
| 개선 전 | 개선 후 | | | | | | | | |
|  <p>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도금설비로 화재·폭발, 급성중독 등 재해발생 위험</p> |  <p>신규 자동화 도금설비 설치</p> | | | |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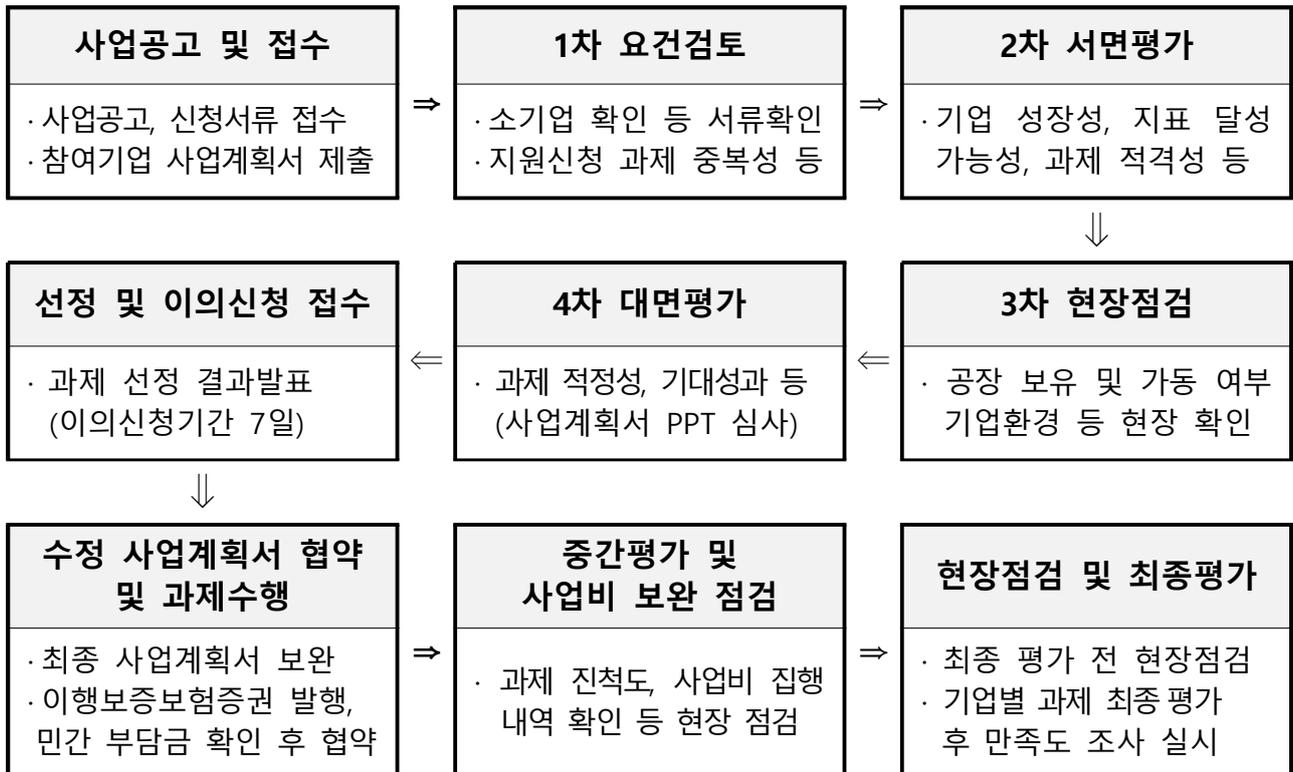
○ 스마트 공정개선(디지털 전환, AI, IoT 등 연계)

-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된 AI, IoT, MES 등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설비 재배치 및 기계 도입을 위한 현장 레이아웃 공정개선

※ 스마트 공정개선 유형은 ‘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’에 참여한 기업만 신청 가능 (해당사업 과제 포기 및 수행 실패 기업 제외)

3

추진절차



4

사업비 계상 및 집행 기준

| 유 형 | 세 목 | 사업비 계상 및 집행 기준 | |
|---|-----|--|--|
| [Track 1] 기업 단독형 | 멘토링 | 멘토링 수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당 최소 60만원 ~ 최대 120만원 이내 편성 ○ 1시간당 10만원의 멘토링 활동수당으로 산정 *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멘토링은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며, 협약 시 편성된 멘토링비는 도비지원금 지원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됨 |
| [Track 2] 협업형 (산학연 등) | 인건비 | 인건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사업비의 10% 이내 이내 ○ 협업형 과제의 협업기관(비영리)만 편성 가능 |
| | 직접비 | 연구수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의 10% 이내 ○ 과제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 수당 ○ 협업형 과제의 협업기관(비영리)만 편성 가능 |
| | | 연구과제 추진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비지원금의 5% 이내 ○ 참여인력 여비, 사무용품비, 회의비 등 ○ 협업형 과제의 협업기관(비영리)만 편성 가능 |
| 간접비 | 간접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비지원금의 5% 이내 ○ 협업형 과제의 협업기관(비영리)만 편성 가능 | |
| 공통 | 직접비 | 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정개선 과제 관련 기기, 장비, 설비 등 용역 및 재료 구매, 연구시설의 설치, 구입, 임차, 사용에 관한 비용 |
| | | 연구활동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비지원금의 10% 이내 ○ 회계정산 수수료는 도비 지원금의 1% 필수 산정 ○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전문가 활용비, 장소 사용료, 기술료 등 |
| <p>※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요령 내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등 참고</p> <p>※ 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협약체결 시 사업비 편성·집행기준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</p> <p>※ 공정개선 과제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며,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</p> <p>※ 통상적으로 관련 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비용을 단가로 산정하되,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할 수 있음</p> <p>※ 작성된 사업비 소요예산 내역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</p> | | | |

5

문의처 및 신청방법

- 문의처 :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문의 : 063-711-2164)
- 신청 이메일 : jbbba164@naver.com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신청 시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메일 신청 발송 후 전화 연락 접수 확인 ※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메일 첨부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에 따른 연번 부여하여 작성 |

6

제출서류

| 연번 | 세부내용 | 자료 | 해당여부 |
|----|---|------|----------|
| 1 | 사업계획서(직인 날인본 및 한글파일 작성본) | 서식 1 | 공통 필수 |
| 2 | 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| 서식 2 | |
| 3 | 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서식 3 | |
| 4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| 서식 4 | |
| 5 | [TRACK 2] 협업형 협업기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| 서식 5 | |
| 6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| 별첨 ① | 첨부 필수 |
| 7 |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 1부(소기업 확인용) | 별첨 ② | |
| 8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) | 별첨 ③ | |
| 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(제조 공장 확인용)</u> ▶ <u>[해당시]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장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 완료必) - 공장면적 500㎡ 미만 : 건축물관리대장(용도 : 공장/제조) 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임대차계약서 ※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"공장" 또는 "제조업소"인 기업 | 별첨 ④ | |
| 10 | 최근 3년간('23, '24, '25년) <u>매출 및 전업율 증빙자료</u> ▶ <u>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부가세확정신고서 (두가지 모두 제출)</u> (* 전업율 평가 배점 관련 재무제표, 부가세 신고서, 제조매출액 증빙서류로 제품(제조)매출이 확인되는 건만 인정함) | 별첨 ⑤ | |
| 11 | 상시근로자 확인자료('26년 내 최근 신고분) ▶ <u>4대보험 가입자명부 (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)</u> (*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) | 별첨 ⑥ | |
| 12 |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(*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유효기간 명시된 건만 인정함) | 별첨 ⑦ | |
| 13 | 연구인력 학위증명서(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) | 별첨 ⑧ | 해당 시 |

참고 1 지원 제외사항

□ 지원기준 : 본 사업 연간 기업당 1개 과제

○ 최근 5년 내 3회 제한, 전년도 공정개선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제외

- 참여기업이 최근 5년 이내(21~25년) 중앙부처 및 지자체,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동일유형의 공정개선 세부사업을 3회 이상 진행한 경우

- 당해년도 동 사업의 3개 세부과제 중, 1개 세부과제만 참여 가능

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복 선정 불가(중복 신청은 가능)

* ① 공정개선 ② 시험분석비용 ③ 품질인증획득에 중복 지원 불가

□ 본 과제 제한요건

○ 연구상한제 적용

-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정개선 과제는 총괄책임자 최대 3개, 참여 연구원은 최대 5개로 제한

○ 우리원 및 도내 유관기관의 유사 공정개선 사업 참여 제한

- 기업당 연간 최대 2회 제한 (지원금 3천만원 이상)

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

-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

-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 기타 유사 공정개선 사업

○ 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 부적합

-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 특성,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참여과제의 신청의 적정성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
- 공정개선의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, 상용화된 기계·장비구입이 목적인 경우

- 신청과제가 개발 또는 기존 공정의 고도화(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 연구성 과제인 경우

○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과제 참여자(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-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의 미이행

*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,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
□ 참여제한 여부

- 대표자 및 과제 관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(또는 참여제한) 중인 경우
-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* 최종 협약 이전 지원 제외 사유의 발견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'2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'2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'2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
 - * 단, 아래의 ㉠부터 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- 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- ㉡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창업 5년 미만 업체 예외)

[지원 가능여부 예시]

| 구 분 | 유동비율 | | 부채비율 | | 지원여부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| 2024년 | 2025년 | 2024년 | 2025년 | |
| A기업 | 49% | 47% | 300% | 400% | X |
| B기업 | 55% | 60% | 550% | 650% | X |
| C기업 | 20% | 75% | 600% | 320% | O |
| D기업 | 100% | 40% | 400% | 540% | O |

참고 2 유의사항

-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후, 사업비가 지급되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도비지원금 지급은 2회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[별첨] 운영요령에 따름
- 선정결과는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과제 신청자를 통해 통보함
- 사업 관련 서류는 비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
- 결격사유 발견 또는 지원 포기 시에는 차순위를 선정함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
참고 3

평가항목

□ 서면평가 (* 현장점검 및 최종 대면평가 평가항목은 서면평가 선정 후 안내 예정)

○ 정량평가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|
| 기업형태 | 제조업 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업율 50% 이상 : 10점(전업율 확인 가능서류 필수) 전업율 50% 미만 : 5점 | 10 | |
| | 도내 소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사 및 공장 도내 소재 : 5점 생산공장만 도내 소재 : 3점 | 5 | |
| 경영활동 | 사업 영위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상 7년 이하 : 7점 사업자등록증상 8년 이상 : 5점 | 7 | |
| | 매출 규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: 12점 직전년도 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: 9점 직전년도 매출 50억 이상 120억 이하 : 6점 | 12 | |
| | 매출 성장률 (최근 3년간 매출액 비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0% 이상 성장 : 16점, 20% 이상 성장 : 13점 10% 이상 성장 : 10점, 10% 미만 성장 : 7점 | 16 | |
| 혁신활동 | 연구개발 준비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설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존재 : 5점 연구인력 1명 이상(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력) : 3점 | 5 | |
| 과제참여 | 최초수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사업 공정개선 지원 최초 참여기업 : 5점 본 사업 공정개선 지원 기존 참여기업 : 3점 | 5 | |
| 총 점 | | | 60 | |

○ 정성평가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|
| 혁신성 | 추진배경 및 지원 필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진배경 및 공정개선 지원 필요성 : 5점 추진전략의 혁신성 및 도전성 : 5점 | 10 | |
| 수행역량 | 인력 역량 및 역할 적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인력의 실무적 역량 : 5점 사업인력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 : 5점 | 10 | |
| 적정성 |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: 5점 KPI 등 목표 추진 설정 적정성 : 5점 | 10 | |
| 사업성 | 성장목표 및 기대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이해도 및 과제 성공 가능성 : 5점 기술적, 경제 산업적 기대효과 : 5점 | 10 | |
| 총 점 | | | 40 | |

참고 4 [Track 2] 협업형(산.학.연) 협업기관 주요과업

□ 협업기관

-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한 대학, 연구기관, 비영리 단체
- 총괄책임자
 -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대학은 대학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, 연구기관 등은 선임급 이상이 원칙(단, 계약기간이 정해진 자일 경우 과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유지 되어야 참여 가능)

□ [Track 2] 협업형(산.학.연 등) 협업기관은 아래의 업무(①~⑤)를 수행해야 하며, [Track 1] 기업단독형은 협업기관의 주요과업을 참여 기업이 직접수행 해야함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참여기업 공정개선 과제기획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정의 필요성, 추진계획, 개발장비 성능지표, 기대효과 등 참여기업 공정개선 과제수행을 위한 체계적 계획서 작성○ 참여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성능지표의 객관적 지표설정 등 성장 고도화를 위한 사업계획 지원 및 사업비 비목 및 계상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산정방법 제시② 수행과제의 연구개발 및 성과 증빙자료 작성·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참여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수행○ 연구개발 및 성과 증빙자료(연구노트, 지식재산권 등) 관리③ 과제수행 애로사항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제수행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애로 해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공정개선의 효율 증대를 위한 현장 멘토링 지원- 참여기업 현황조사, 자동화 공정 도입, H/W, S/W 도입검토 등④ 과제관리(사업비, 중간보고, 최종 결과보고 등)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운영요령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○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, 증빙서류 관리 지원⑤ 기타 전담기관의 요청사항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참여기업의 지원성과 측정, 우수사례 발굴○ 참여기업 사업만족도 조사 및 분석,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|
|--|

참고 5 소기업 기준 참고

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| |
| 2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 |
| 3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 |
| 4. 음료 제조업 | C11 | | |
| 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 |
| 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 |
| 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 |
| 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 |
|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 |
| 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|
| 17. 수도업 | E36 | | |
| 18. 운수 및 창고업 | H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 |
| 19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 |
| 20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| |
| 21. 광업 | B | | |
| 22. 담배 제조업 | C12 | | |
|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 |
|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 |
| 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 |
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 |
| 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 |
|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 |
| 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 |
| 30. 기타 제품 제조업 | C33 | | |
| 31. 건설업 | F |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|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|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 |
| 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R |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|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 |
| 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 | S(S94 제외) | | |